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고금 운용수익 예산 계상〉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2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고금 운용수익 예산 계상(안 제34조제2항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국고금 운용수익 예산 계상(안 제3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u>통합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함</u> ○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 자금운용 수익금을 <u>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u> - <u>통합계정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u> - <u>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u>	○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u>일반회계가 부담함</u> (안 제32조 제4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 수익금을 <u>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u> (안 제34조 제2항)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①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② 금융회사 등 예치 또는 단기 대여, ③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매매, ④ 그 밖의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와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함.¹⁾

1)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연도별 국고금 운용수익 및 이자비용]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도 운용수익 이월액	26	82	786	2,059	3,662	838	141	1,099	3,287	1,805	357
운용 수익금	545	1,259	1,433	1,628	824	254	1,170	2,857	2,762	1,310	1,147
- 수익률	1.65	1.37	1.30	1.57	1.63	0.71	0.70	2.07	3.63	3.45	2.72
이자비용	1,308	555	160	24	1,648	1,133	293	668	4,244	4,865	3,567
- 운용수익	489	555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504
- 예산	819	-	-	-	-	182	81	-	-	2,107	2,063
차년도 운용수익 이월액	82	786	2,059	3,662	838	141	1,099	3,287	1,805	357	-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이러한 국고금 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는 동법 제53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 출자 및 전대차관 등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2)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운용수익은 해당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음.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가의 재정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처리되어 국가재정의 총괄 규모를 왜곡하고 재정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고금 운용수익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은 연도별·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편성 시점에 당해연도 운용수익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2025년 월별 국고금 운용수익]

(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	-	-	2	4	912	-	3	7	6	3	1,826
2024	-	-	3	-	4	694	-	122	-	-	-	487
2025	-	-	2	-	-	731	-	-	-	-	-	414

자료: 재정경제부

[2023~2025년 월별 이자비용]

(단위: 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재정증권	-	-	-	240	297	231	368	467	386	374	385	-
2023 이자상환 한국은행	-	-	-	-	-	-	-	-	-	-	-	-
2023 일시 차입금	-	-	-	-	-	642	-	-	499	-	-	356
2023 이자상환 재정증권	-	-	-	466	493	484	615	476	204	227	-	-
2023 이자상환 한국은행	-	-	-	-	-	-	-	-	-	-	-	-
2024 일시 차입금	-	-	9	-	-	601	-	-	646	-	-	645
2024 이자상환 재정증권	-	-	-	402	377	368	465	338	37	38	-	-
2024 이자상환 한국은행	-	-	-	-	-	-	-	-	-	-	-	-
2025 일시 차입금	-	-	157	-	-	410	-	-	283	-	-	691
2025 이자상환	-	-	-	-	-	-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은 금리, 세입 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워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시 잦은 과부족 발생이 우려되고, 운용수익의 사용처가 일시차입 이자 상환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정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65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u>이자</u>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 ⑥ (생략)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생략) 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u>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u>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법률 제21065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이자</u>와 <u>관련한</u>-----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u> <u>이입하여야 한다.</u> <삭 제> <삭 제> ③ ----- ----- ----- -----<u>제1항</u>-----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u>통합계정, 각 회계</u>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⑤ 제3항----- ----- --- <u>각 회계</u>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계정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생긴 수익금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60